

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 - 27호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5월 7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결정 또는 관여하는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공공요금의 결정 과정에 신중을 기하고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 그 밖에 행정조직 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명칭변경,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요금 중 교통요금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3조제2항제5호)
-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요금을 조정할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시의회에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제1항)

- 행정조직 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명칭 및 자구를 수정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 5.18(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440-6232, 팩스 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붙임자료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물가관련”을 각각 “물가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교통요금(시내버스 · 택시 및 도시철도 요금)

제3조제2항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임 · 직원”을 “임직원”으로 한다.

제7조 중 “사망 · 질병 · 기타”를 “사망 · 질병 · 그 밖”으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경제수도정책관”을 “물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 중 “사항이외”를 “사항 이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제3조(기능) ① ----- ----- -----.
1. <u>물가관련</u> 규정의 제정 및 개정	1. <u>물가 관련</u>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u>물가관련</u>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3. <u>물가 관련</u>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u>기타</u>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u>그 밖에</u> ----- -----
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도시가스 요금(<u>지식경제부장관</u> 이 승인하는 도매요금과 연동하여 변동되는 소비자요금은 제외)	4. -----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 -----
5. <u>교통요금</u>	5. <u>교통요금(시내버스·택시 및 도시철도 요금)</u>
6. ~ 9. (생략)	6. ~ 9. (현행과 같음)
10. <u>기타</u> 시장이 물가에 미치는	10. <u>그 밖에</u> -----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제4조(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과 시의회 의원, 경영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 소비자 대표(소비자의 권익 옹호 또는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언론인 등의 인사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소비자 대표 위원은 위원총수의 2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7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 ③ (생략)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생략)

제10조(간사) ① (생략)

제4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임직원-----

---..

제7조(해촉) -----사망·질병·그 밖-----

-----.

제8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0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경제수도정책관이 된다.

③ (생략)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물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견청취) ① 시장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
--사항 이외-----
-----.

관계 법령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공급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 및 등기)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조례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계 법령 발췌 사항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공급규정)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

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1. 요금이 적절할 것
2. 요금이 정률(定率)이나 정액(定額)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가스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 또는 가스사용자 간의 책임과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이 적절하고 명확하게 정하여질 것
4. 특정사업자나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닐 것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금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 및 등기)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分院(分院)을 둘 수 있다.

- ② 지방의료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分院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分院을 두는 경우
 2. 지방의료원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3. 지방의료원을 신축·이전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상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 상 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경제산업국 생활경제과장 이능환